



고용노동부

서울지방고용노동청

수신 대한전문건설협회 귀중
(경유)

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사망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배포자료 안내 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'22.1.27.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며, **전문건설업의 경우에도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.**
※ '24.1.27.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
3. 이에 우리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및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,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자료집 등을 제작·배포하여,**
 - 업체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고, 본사가 주도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실태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.
4. 한편, **사망사고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규모가 작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, 사망사고 예방 활동을 원도급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**
5. 이에 우리청 **홈페이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 상기 자료들을 게시*하였으니, 귀 협회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본사가 주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점검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 게시된 자료를 안내하여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*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- 뉴스·공지 - 알림 - 안내 게시문 참조

끝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


근로감독관 **황성민** 과장 전결 2022. 10. 20.
신동극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지도과-5784 (2022. 10. 20.) 접수

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0층 건설산재지도과 / moel.go.kr/seoul

전화번호 02-2250-5779 팩스번호 02-3789-3006 / arcure@korea.kr / 비공개(7)